되어야합

복지부의 **이중성**과 중앙회의 불투명성

복지부는 **안전성, 유효성 검사가 불가능한 첩약을 한약제제화하는 정책을 추진**하면서 이와 **역행되게 첩약건보를 실시**하려는 중입니다.

또한 탕전기준을 강화하여

윈내탕전을 고사시키려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- 3. 공용 탕약표준조재시설 인프라 구축 ('21년~)
 - 한약조제 시설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한방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탕전표준조제시설(GMP급) 지정 (또는 신설)』
 - 기존 원외탕전실 중 희망하는 기관은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지정, 필요시 신설, 기능 보강 등 다양한 방안 마련 』
 - 공용 탕약표준조제시설로 <u>지정시</u> 기술지원, E-주문시스템 등을 지원 하되, 한약 처방, 한약재 수급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▲
 - GMP 생산 설비를 충족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매우 소수로 공용 인프라 구축시 다수 한방의료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☆
 - (처방·조제)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제로 개편하고,
 본 사업 시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 의무화 및 DUR 구축 근거축적
 - · 인증제 개편 시 탕전실 인력기준 마련·적용 등 위한 개선방안 포함
 - 본 사업 시에는 공동이용 탕전실은 인증받은 탕전실만 급여적용을
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기간에는 최소 기준 마련 하여 적용
 -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 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·시설 기준
 - DUR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별 한약재의 특성, 한약재와 한약재

2020.7.24. 첩약 시범사업 보고자료 p.10, '안전성·유효성 강화 방안' 中

복지부의 **이중성**과 중앙회의 불투명성

중앙회는 **첩약에 대한 조제내역, 원산지 공개** 및 **엄격한 탕전 규정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약 내용을**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정부가 첩약건보 2차 시범사업부터 인증원외탕전을 필수로 요구했을 정도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집요했던것으로 보아 결국 정부는 첩약건보시범사업까지 최소 기준으로 유지하다가 본 사업에서는 인증원외탕전실의 탕전을 의무화시키고 원내탕전이나 비인증원외탕전실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조제권의 박탈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.

첩약건보 본 사업 시 **인증원외탕전만 인정하고 원내탕전을 중단시키는 정책은** 결국 **한의사 조제권의 박탈**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**최종적으로 의약분업을 초래**할 것 입니다.